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24. . .<br>(제 회) |      |

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 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 | 국무위원 송미령<br>(농림축산식품부장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24. . .  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「탄소흡수원 증진 및 유지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으로 규정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추가(제25조의3)

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으로 「탄소흡수원 증진 및 유지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것을 명시

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예 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##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3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 「탄소흡수원 증진 및 유지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업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5조의3(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) 법 제29조의3제1항제9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 | 제25조의3(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)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.                    |
| 1. ~ 16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~ 16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17. 「탄소흡수원 증진 및 유지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업</u> |
| <u>17.</u>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18.</u> (현행 제17호와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| 산림청 산림정책과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연 락 처     | (042) 481 - 4037 |